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2月 4日(月) 10時02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財務局)

審査된案件

1.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財務局)(鐘路區廳長 提出) 2面

(10時02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董連浩 局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제10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잠시 실패 없이 계속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산 주무부서인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의원 세미나에서 우리가 익혔던 지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뜻에서 유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경상비와 투자비 배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감축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관리는 역기능적이거나 중복,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능, 기구, 인력, 정책 그리고 사업 등을 의식적으로 정비하는 결정과 집행을 의미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 있습니다만 예산의 절감과 관련하여 감축관리란 자

원 소비를 낮추고 조직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변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축관리란 조직의 활동영역과 지출의 범위를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행정단위별 경비를 최소화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관점입니다.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관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기구확장이나 인원 증원 등은 억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성장관리나 감축관리와 같은 관리기법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지침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다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재무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08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2001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무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순서에 따라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내년도 일반행정비 중 세출예산(안) 총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편성예산액은 11억 8,653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회계관리부문에 2억 5,795만 6,000원, 세무관리 부문에 6억 689만 1,000원, 지적관리 부문에 3억 2,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 12억 7,113만 5,000원에 비하여 약 7.1%인 8,460만원이 감소 편성된 결과입니다. 그 사유는 세무관리 부문에서 각종 지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에 따른 통장보상금의 신설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체납관리팀 구성에 따른 소요경비 등 1억 7,939만원이 증액되고 지적관리 부문의 임야 도시 지적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1,951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각종 보조금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재산회계 관리분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보조금 사용 부서별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에 4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회계관리예산 2억 5,795만 6,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위원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8,070만 4,000원, 국유 및 시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취득비의 사업예산 7,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분야 예산으로써 예산은 총 6억 689만 1,000원으로써 고지서용지구입비, 고지서송달통장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6억 89만 1,000원과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 부문의 예산은 3억 2,168만 8,000원으로서 토지대장발급 등 제작인쇄비, 검증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2억 5,424만원과 전산개발비 및 임야도시지적화사업 장비구입 등 사업예산 6,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지원부서로서 2001년도 예산(안)중 87.2%인 11억 8,653만 5,000원 중 10억 3,583만 5,000원이 경상적경비이며 사업예산 12.8%인 1억 5,070만원도 전산개발비 및 장비구입 등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0년 11월 21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1,518억 8,369만 9,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457억 9,619만원보다는 4.2%가 증가했고 최종대비 11.3%가 감소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총예산 규모입니다. '98년도 IMF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10%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최종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는 증가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1,171억 6,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72.3%, 의존수입이 27.7%로서 자체수입은 작년도 66.3보다는 다소 증가율이 72.3%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재정규모가 건실해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의존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증가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작년 371억에서 금년도에는 325억으로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

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2.1%로서 작년도의 60.0%보다는 다소 증가가 되었고 투자사업비는 작년도 36%에서 34%로 다소 후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비는 1.6%, 예산도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302억 1,741만 9,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의 99.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0.9%는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56%를 점유하게 됐고 투자사업비로는 32%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심의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가 가능한 예산과 심의수정이 불가능한 법정예산을 구분하여 심의의 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정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자녀학비보조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여비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있는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심의가 가능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기준단가가 예산지침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연간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은 월 58만 5,000원, 부구청장은 54만원, 4급은 월 31만 4,000원, 5급은 월 10만원,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월 5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로 편성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30명까지 30만원을 편성하되 1명 추가시 5,000원이 추가됩니다. 다음 심사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가 있고 일반운영비는 기타 소모성 모든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차후 계약, 재심사 등이 수반되는 업무이고 여기서 예산 책정을 했다가 계약후 집행잔액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각 여비도 삭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있는 면허세는 1억 8,664만 2,000원이 2000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무역업에 대한 면허세가 2000년 7월 29일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 하천사용료도 1억 2,42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주거용 요율이 변경되어 0.015%에서 0.005%로 %가 감소됨으로써 그에 따른 법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창신1~3동, 명륜3동의 쓰레기가 삼창으로이관되었고 승인1~2동, 혜화동이 대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진료수수료는 1억 8,956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 요인은 공무원 신체검사가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에 대한 공무원 신체검사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약 조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약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국유재산법이 2000년 7월 27일 개정을 하면서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율은 현재의 30%에서 20%로 됩니다. 반면 임대수입은 30%에서 5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

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5억 2,200만원이 증가되도록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억 3,43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5억 2,230만원이 증가했고 국유재산법의 점용료 귀속률이 30%에서 50%로 상향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실적기준으로 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 종이류, 소규모수선비, 행정장비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은 과별 인원수와 행정장비 수량대로 기준단에 따라 각 과별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의 인원수와 행정장비 수량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 의해 편성합니다. 다음 40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은 구기천, 평창천 2개 하천으로 연장이 약 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현황에 비추어 용역의 필요성, 용역결과 정책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꽃묘구입 예산으로 녹지분야에만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1억 2,98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매년 반영되는 경직성 경비화되고 있습니다. 이 꽃묘 식재 결과는 거국적 거시적 효과사항이므로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종로구 공유토지 분할위원 수당은 3개월분만 책정하고 있는바 이는 2001년 3월 31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426쪽 각종위원회 운영 경비 산출기초에서 16명 10회는 10명 10회, 6명 3회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쪽 이자수입으로 16억 6,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적립금 213억 2,710만 2,000원을 이율 7.8%로 적용한 수치로 타당한 이율 적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75쪽 하단 불법주·정차 과태료채납액이 190

억 7,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9.8% 18억 6,954만 6,000원만 책정하고 있어 징수대책이나 징수방법, 징수목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6쪽 노외주차장 설치용자금 5억원은 매년 계상하고 있는바 현재 운용상황이나 효과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 주차장부지 매입 5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추진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보완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주차장부지 매입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승인 신청돼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481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포괄비 형식으로 36억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은 개별부지 매입시 매입부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함으로 개별 편성의 의미가 미비함으로 적립금에 합산하되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소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제 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종로구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국 산하 각과 국장님을 위해서 각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원부서인 재무국을 굉장히 종로구청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세입이 지금 자립도가 7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의존재원이 높아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무국 직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재무과의 이자수

입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이자수입이 4억 3,4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2001년도에는 예산을 9억이 넘게 평가했어요. 이걸 말하자면 2000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과소 편성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2000년도에 예산서 상에 세입으로 이자수입을 4억 3,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실제로 2000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9억 정도의 예산 수입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예상 이자수입인 세입을 무려 120%나 늘려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편성된 2000년도 예산은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다소 과소 책정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 2000년도에는 자금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각종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9억 이상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상수입을 제대로 산정을 못 하면 그런 원인이 생길 수가 있지요. 혹시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종로구의 2000년도 1일 평균 공금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월별 저희가 내고 있는 계약 130억 정도

○安載弘委員 월별이든 일별이든 결국 1일 평균 공금잔액이란 것은 365일로 나누어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20억이란 돈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일 평균 공금잔액이 120억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대로 우리가 '99년도에 이자수입을 계산할 때는 한 4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2000년도 예산에는 이자수입을 4억 정도 잡았다가 실제로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이자가 9억으로 튕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20% 정도 늘다보니까 내년도 이자수입을 그렇게 늘려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평균 공금잔액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2001년도에는 찾아서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9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포시에서 유휴자금 관리에 관한 행정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여건은 좀 비슷하는데 평균잔액을 약 40억 정도 밖에 안 남기거든요. 그 전에는 '98~'99년도에는 80 정도를 일평균 공금잔액으로 남겨놨다가 그 다음 해에는 40%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무려 50% 이상 증가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타지방자치 사례를 우리에게 맞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9억 5,000만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군포시부터 답사를 하고 또한 평균잔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소규모 필지들을 말이지요 아마 재무과에서도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나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계속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나 구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매각한 자료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財務課長 趙秀完 매각사례요? 저희가 소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에 저희가 지금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정말 측량을 하고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현황을 뽑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약 1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7억 7,900만원 어치의 매각 실적 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예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니다보면 말이죠,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폐하천에서 용도폐지한 땅에 대해서도 매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것을 불하라고 하나요? 매입을 못한단 말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財務課長 趙秀完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사실 그러한 땅들은 구와 시의 입장에서는 용도폐지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땅이 주민들한테 매수가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매수가 된다면 주민들은 그나마 조그만 땅이지만 합법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에서는 끊임없이 내년도도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지고 매각을 권유하거나 또는 매각의사를 밝혀서 최대한 그러한 것을 매각처리하게 되면 주민도 좋고 세외수입도 증가해서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금년에도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용폐가 돼서 넘어오면 바로 우리가 점유자에 대해서 매각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幹事!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董連浩 財務局長님! 그리고 과장님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을 3년째 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인데 어떻게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의 산출기초가 3년간 동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吳弼根委員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총정의 말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예산의 산출기초가 똑같다는, 구체적인 거를 지적을 해주시면

○**吳弼根委員**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같은 경우 작년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기본사용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수리비 이러한 것이 인원만 틀렸지 기본은 똑같이 편성되었다 이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일정한 단가가 제시돼서 그 단가에 준해서 편성이 되겠고 더욱 중요한 말씀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어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吳弼根委員** 그리고 3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0년도 예산 항목에 없던 재무관련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용처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책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부터는 각 과로 이러한 과에 해당되는 업무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과로 지금 배분을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각 과에 배분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등기우편발송고지서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지방세 고지서와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드는 등기우편용입니다.

○**吳弼根委員** 통장 송달용은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등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관내에 해당되는 세금고지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세금고지서 돌리는 것을 우리 구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명륜3가동하고 송인1동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했었는데 향후에는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동에서 해왔던 기능을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과 저희 구청 구와 세금고지서 돌리는 걸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건 돌리는 데 340원의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정기분 관내분 세금고지서 송달을 하기 위한 통장보상금이 책정된 것이고 그 외에 등기우편물 요금 책정된 것은 관외분이라든지 체납고지서 송달분이라든가 또 통장님들이 돌리다가 또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못돌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송달을 위해서 확보된 등기우편물용 예산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이 등기우편 발송고지서를 보니까 제세 등기우편료가 39페이지를 보면 4,549만원, 등기우편 반송료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또 393면에 고지서 통장간담회비로 해서 345만원, 고지서 송달 통장보상금 2,424만원 또 396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우편료 4,095만원, 반송료 700만원 또 397면에 고지서송달 통장간담회비 517만원, 고지서송달 보상금 6,460만원 등 전부 합산금액이 총 1억 9,490만원인데 이 통장 간담회를 꼭 1년에 2번, 3번 해야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마치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吳弼根委員** 아니,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나눠진

○**財務局長 董連浩**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금고지서 송달을 안해왔습니다. 처음 송인1동하고 명륜3가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했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중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통장님들하고 각 동별로 간담회를 한번 사전에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통장님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그러한 어떤 우리 구의 어려움도 보고를 드리고 통장님들에게 그 세금고지서를 돌리는 데 따른 금지도 심어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느냐 싶어서 통장간담회 비용을 책정을 했었고 또 등기우편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통장님이 돌리지 못하는 돌릴 수 없는 세금고지서 즉 관외분이라든가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등기우편으로 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吳弼根委員 통장님을 아침에 뵈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난번에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財務局長 董連浩 지난 11월 반상회 때 저희가 일제히 각 동을 나가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돌리게 된 배경설명을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임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吳弼根委員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간담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1회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담회비도 아끼고 또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기 송달하는 거하고 반송비 해가지고 9,744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송달했을 때는 340원씩 계산해보니까 2,511만원밖에 안돼요.

○財務局長 董連浩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해주신다면 세무2과장이

○吳弼根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통장님들께서 아주 책임감을 갖고 가서 사인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세금고지서를 돌리는데 해당되는 만큼의 경비는 얼마 안되는데 등기우편 요금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반송료도 있고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지방세고지서는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정기분에 한해서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돌리고 있고 많은 세목 중에는 정기분에 의해 가지고 송달이 되는 고지서도 있겠습니까마는 수시로 부과되는 그러한 세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吳弼根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등기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아까 통장간담회비 책정한 것은 해화동에 우리 吳委員님께서 계시는 해화동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그러한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반상회 때 저도 다른 동을 한군데 갔었습니다마는 일부 동은 통장님들이 상당히 배타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음을 감안해서 간담회비를 책정해놨습니다마는 책정된 간담회비 전액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향후에 간담회같은 게 한번으로 간담회로서의 충분히 효용된다면 2번, 3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吳弼根委員 국장님께서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통장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통장들이 송달할 때 받는 비용이 340원인데 지금 등기우편하고 등기우편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1,300원 정도

○吳弼根委員 반송료가 50% 몇 % 적용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10% 정도

○吳弼根委員 그렇다면 반송료까지 합친다면 2,000원꼴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한 340원은 현실적으로 우편료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 예산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더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340원의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례를 수집을 해서 각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스트를 적용을 했고 또 하나는 통장들한테 좀더 많은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좀더

많은 단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좀 더 많이 쓰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吳弼根委員 많이 쓰는 것이 아니죠.

○財務局長 董連浩 통장 보상비를 더 많이 책정한다면 이를 떼면 340원에서 더 이상의

○吳弼根委員 제가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요금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하고 합치면 9,744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통장들한테 지급할 때는 2,100만원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천원씩으로 해주면 예산도 절반을 줄일 수 있고

○財務局長 董連浩 吳委員님 좀 가닥을 잡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책정한 등기요금이나 반송요금은 통장님들이 할 수 없는

○吳弼根委員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책정을 많이 해서 주면 등기우편보다 더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財務局長 董連浩 옳으신 말씀인데 이를 떼면 관외로 나가는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吳弼根委員 관외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財務局長 董連浩 우리 종로구 말고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구나 용산의 이러한 관외로 나가는

○吳弼根委員 종로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종로로 나가는 것은 체납고지서 등은 불가피하게

○吳弼根委員 체납고지서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러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계약업무보고 부분 있죠? 상당부분 계약업무를 취급할 때에 최저 낙찰 87% 적용을 해서 밑에 있는 마지막 한 두서너 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무구조 등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심사를 해서 재무구조도 괜찮은 이러한 데다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2, 3개 업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때에 따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저희 자의로 2개 내지 3개 내지 5개로 책정할 수 있는 자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2, 3개 업체에 그 중에 가장 건설한 업체를 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니까 금액에 의해 가지고 2 3개 업체를 선정된 2, 3개 업체에 대해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李炯述委員님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李炯述委員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근 10여 년 동안 나가서 봤을 때동에 적은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들이 가는 데마다 동일한 업체예요. 전부다 같은 업체가 한 업체가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이 업체만이 구비서류를 잘 해줄 수 있다. 다른 업체는 구비서류가 걱정이 되어 못한다. 동일업자가 몇년을 지속적으로 종로관내에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설득력이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혹여나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에서 한 말씀 드리니까 세부지침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지적과 소

판에 대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기로는 종로가 우리나라에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1위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종로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종로구민들에게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덜어주는 우리 구민들이 종로라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전산화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전산화 처리를 하면 구청에서 땀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향후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부서가 법무부에서 발급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러한 전산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다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부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李炯述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를 하는데 동일업자가 참석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향후에는 지난 10월 1일 이후에 3천만원 이상짜리는 옛날에는 1억 미만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천만원 이상도 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업자가

○**李炯述委員** 좋은데 일단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업자 저 업자로 바뀌어졌을 때 일하는 부분도 좀 건실하게 잘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한다 하면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소규모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그 금액을 나눠 가지고 다음 달에 그대로 그 업체가 계약을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많습니다. 두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財務局長 董連浩** 그리고 지적도나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李炯述委員님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등기가 전산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부 완료는 안되고 60%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각 구청에서 지적민원실에다 등기부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파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등기소에 나가서 등기부등본을 거기서 떼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미비되고 해서 가격이 오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오는데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더 싼 가격으로 고질의 품질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으면 자꾸 듣는 소리가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종로는 자치를 하는 다른 구청 다른 곳보다 한발 앞서 가면 종로구민에게 더 궁지도 심어주고 또 종로구민이 좀 혜택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앞서가주면 좀더 종로구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부분이 앞서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종로가 앞서 가지고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감사합니다.

○**李炯述委員**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취소 한 곳이 두군데 있다고 했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李炯述委員** 어떤 연유로 2곳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해서 적발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업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한 2달 전인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분

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한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못받도록 1억 이하의 전세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고 얼마 이상 못받는다 그 부분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아마 종로관내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는 거의 다 한쪽에 받는 돈이 두곳에 팔고 사는 사람을 합쳐 가지고 금액을 징수를 합니다. 통례적으로 봤을 때 25만원 받아야 될 부분을 한집에 50만원씩 한곳에 그렇게 받고 거기에 또 부동산중개수수료 해가지고 게시판에 부동산중개소도 붙여놔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 조례하고는 안맞아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도 직접 들어본 것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아주 행패가 심하면 현직의원 보고도 그렇게 나가면 다른 종로주민들은 모르고도 많이 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서민 상대로 해가지고 친절하게 일정금액을 제시해주고 법정금액을 제시해주고 몇푼 더 받는 것은 하더라도 양쌍방 돈을 25만원짜리를 한쪽에 50만원씩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는 아마 지도감독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답변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종로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일전에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찾아가간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민이 본 위원도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샀을 때 취득을 안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취득세를 묻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 집을 등기를 하고 넘어왔을 때 취득세를 물고 등록세를 무는 거지 집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대화가 잘 안돼서 해약이 됐단 말입니다. 본인도 난 등기도 안하고 안했으니 취득세는 물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묻다고 종전에 생각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러한 것은 특정한 사안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대화를 나눈 시점에서는 저도 세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던 그 당사자는 취득은 실질적으로 안됐고 그렇지만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자진신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세가 부과가 됐고 또 그 이후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서 변동됐었던 사항을 다시 와서 신고를 했었으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터인데도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써 결국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되시는 분이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우리 구의 의견으로 제시를 해서 시에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적용해도 되고 적용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법에 규정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취득세는 서울시세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까지도 이 서울시민 많은 분들을 그대도 물어봤을 때 자기가 자진납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검인을 받으러 오면 검인도장을 찍어주면서 고지 발부를 해줍니다. 어느 구청이고. 해줄 때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약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내가 그 집을 결국은 중도금도 안 치르고 잔금도 안 치르고 다 끝났으니까 취득세 이런 거 뒤에 묻고 잘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한달 이내에 등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물어야 한다 이게 중대합니다. 보통 500만원, 1,000만원 이거를 집도 안 사고 물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온다면 행정을 맡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고지발부를 받

아갔을 때 당신이 이것을 한달 이내에 해약을 한
다 하더라도 다시 신고를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하고 못을 박아주는 게 우리 종로 구민에게는 아
주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를 빌어서 이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좀 힘드
시더라도 내가 집을 결국은 사지 않고 계약을 파
기하고 난 뒤에 그대로 취득세를 무는 그런 고통
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셔서 종로구민이 몰
라서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 중에 일
부 감사적인 얘기도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委員長 金福同** 네. 하십시오. 좀 짧게 해주세
요.

○**吳錦南委員**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5%를 세외수입을 올려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
 니다. 왜 갑작스럽게 25%의 세외수입을 올려서
 8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지, 세외수
 입을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건을 수 있는 세외
 수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것이 세계잉여금 24페이지에 나와
 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걸로 사료됩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한 28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
 서 많아진 거네요.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급은 1년에 한번씩
 매기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등
 급은 전년도와 금년도 사이에 어느 정도 등급이
 올랐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적과장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서울시 평균이 2000년 1월 1
 일 기준 약 2.19% 정도 올랐습니다. 타구에서는
 1월 1일 기준 2.39% 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동
 안 한번이던 토지이동이나 합병, 분할 또는 국·
 공유지가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 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개인 등가가 올라가게 되
 면 종합토지세도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종합토지세는 요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합
 니다. 그것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
 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
 지가가 2.3% 정도 늘어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늘
 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
 이 248억이 금년도 목표고 내년도에는 251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약 3억 정도 늘어
 난 건데 공시지가 대비로 한다면 한 2.3% 정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것은 IMF 때나 서울시에서
 공시지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과표를 정할 때
 적용률이라고 해가지고 100% 반영을 하도록 이렇
 게 안 줍니다. 서울시에서 5단계나 4단계식으로
 해서 세액이 일시에 증가되면 조세저항 우려 측면
 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가 늘
 어나게끔 그 적용률이라는 것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입을 할
 때도 시에서 검토를 받고 이 사항이 된 거고 또한
 매년 면적증가율이 있는데 사실은 도로나 이런 비
 과세 지역이 0.99%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과세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시지가 100% 적용을 안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정부
 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일

개인에 은행당 5,000만원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구금고 평잔액이 170억이라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평잔액 170억을 어느 한 은행에 종로구 자체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은행에서 어떤 부실이 있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책임지고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하고 앞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금자보호법이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저희가 구금고로 지정한 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시행과 관계없이 저희가 예치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약정을 체결했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률에 따르지 개인약정이 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財務局長 董連浩 약정을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약정 상으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냈을 경우 국가에서 내린 그 법이 위지 약정이 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財務局長 董連浩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각종 기관이 구금고로 지정하는 각종 금융기관은 그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근거 같은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해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吳錦南委員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그래서 그게 IMF 때 인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중은행에 맡기지 않고 일단 금고 같은 데 맡겨 가지고 그게 지불불능 사태가 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개 구가 서울시와 연결해 가지고 왜냐 하면 서울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서울시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

를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금고에서 예산 배정을 한다든지 주민이 각 은행에 OCR카드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전자장비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금고에 서울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은행인 한빛은행에 시금고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 산하 25개 구청이 연계해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이자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협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인정해준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財務局長 董連浩 걱정을 해야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고를 기관 단위로 설치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과 더불어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금고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같이 보호가 되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副議長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재무국 소관에서 기초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은 각 과 단위에서 과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각 과별 편성된 예산을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냅니다. 요구를 내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에서 받은 예산을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소위 말해서 예산사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인 예산이 편성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2000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일반회계가 1,114억 2,100만원이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었던 예산입니다.

○**丁炳煥委員** 그게 2000년도 예산으로 봅니까? 1,710억 17만 9,000원을 예산으로 보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2000년도 예산은 1,114억이 2000년도 예산이고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는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쓰기 위한 2001년도 예산입니다.

○**丁炳煥委員** 알겠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의 경우에 또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일괄적으로 이걸 저희 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국장이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비비를 쓰면 됐지 3회에 걸쳐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의 경우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점도 고려를 하시고 별도로 추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은 이를테면 '99년 말에 2000년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던 각종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증액해서, 갑자기 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증액해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애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여진다든지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금년에 예산을 쓰는 것 중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 사업을 바꿔야 하는 사유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丁炳煥委員** 局長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답변해주셔서 고맙구요 2000년도 당초 예산이 1,450억인데 추경에서 1,715억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금년도 예산 맞습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간에 본 예산이 1,450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차 추경으로 해서 1,700으로 간 거 아닙니까? 최종 예산이, 그게 2000년도 예산이지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이 2000년도 예산으로 보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다. 1,171억은 내년도 예산이 되고 1,114억은 금년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이 최종 당해년도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인물 383쪽 재무과 소관에 전년도의 10%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제일 상단에 전년도 2000년도 예산이 10억 2,896만 7,000원이고 2001년도 8억 2,484만 7,000원이 재무과 소관 예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맞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다면 19%가 감소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도 2001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경에 할 걸로 생각하고 감소한 예산을 짰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지 않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보조금이 연말에 가면 보조금을 시나 중앙정부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는 그 예산편성을 전부 재무과에다 예산편성을 해놔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분산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은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局長님! 전년대비 19%가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재무국 소관에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초예산을 초월해서 추경을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재무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에서 특별한 교부금을 더 준다는지 아니면 저희가 세금을 좀 노력을 해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목표액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여 준다는지 해가지고 특별한 재원이 생겼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384쪽 하단에 구유지 경계측량수수료가 한 필지당 12만 1,500원이었죠? 그런데 금년도 당해년도에는 24만 2,000원인데 왜 이거는 감소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측량비가 인하됐습니까? 당해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행자부의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 작년에 했던 것은 현황측량수수료를 같이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닙니다. 2000년도 측량수수료도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은 더 좋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거는 다 인상됐는데 측량만 인하됐습니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측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현황측량이, 경계측량만 단순히 하면 지금 계산이 맞는데 어려운 사항들이 복잡한 것이 있을 때

○丁炳煥委員 課長님! 이 예산편성내역서가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편성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하됐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측량수수료규정은 과다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다른 거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증액됐는데 이거는 아니 물론 감소된 게 좋습니다만 이거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丁炳煥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분할측량은 예를 들어서 한 단지를 절반으로 나눈다든지 몇 등분으로 나눈다든지 하고 경계측량은 이쪽과 저쪽 필지가 다를 적에 경계측량이 아니겠어요? 그거 수수료가 다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측량은 필지의 경계점 마다 굴곡점 표시를 다 해주는 것이고 분할측량은 나뉘지는 양쪽 경계에 관한 새로이 정해지는 경계선을 정해서 측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정이 다릅니다.

○丁炳煥委員 분할측량이 더 비싸다는 말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더 비싸게 책정합니다.

○丁炳煥委員 아무튼 알겠고 본 위원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여비규정에서 전년대비 42%가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여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을 해서 각과에다 필요한 때 영달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 과별로 분산해서 편성을 하는 관계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대부분 재무국소관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29%가 증가되었고 또 시책추진비가 약 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가서 보조사업이 뭐냐 6,200만원이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어떻게 신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808%가 증가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387쪽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丁炳煥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재무과장이 하세요.

○財務課長 趙秀完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국가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변상금을 받으면 우리한테 보조금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데 써왔습니다. 매년 써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추계나마 우리가 국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도까지만 해도 편성을 안하다가 보조금이 하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38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386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여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앞의 여비는 우리 직원 19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상의 여비 편성된 지침에 의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88페이지의 여비는 국공유지 관리상에 특별히 출장을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나가서 확인하고 측량을 할 적에 쫓아나가서 확인하고 또한 전산화되면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몇명 고용을 해가지고 다시 측량할 적에 다시 여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여비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국비여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본 여비규정에다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면 안됩니까? 이러한 경우에.

○財務課長 趙秀完 사업별로 국공유지 재산관리로 나온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丁炳煥委員 어차피 일반여비는 국공유지 측량하는데 가더라도 일반여비에서 나 어디 출장 갑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회계장부를 측량이랄지 국유지랄지 사유지랄지 이것을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것을 복명할 때 이 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출장부 근무상황에 의거해서 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됩니다.

○丁炳煥委員 여비규정 그러면 총계장 원장이랄까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근무상황부에 개인별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보다도 재료비가 1,399만 6,000원이 포상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없고 2001년도만 이것이 신설되었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나오면 그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산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산 편성의 제도적인 차이점 때문에 작년과 금년의 제도적인 차이점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증대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 前 議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洪承台委員 이것은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예산 구 세입을 갖다가 어떠한 방침에서 잘못된 점도 우리가 질의 아닌 방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이라든가 또 물품구입이라든가 전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임대 있잖아요? 임대건물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입찰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임대를 주는 일례를 들어서 북악스카이웨이라든가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라든지

○財務局長 董連浩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가 임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또 북악팔각정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입찰 관계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부서 이를 떼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니까 입찰을 어디서 보느냐 이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입찰 자체를 거기에서 주관부서에서

○洪承台委員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 시설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洪承台委員 과거에는 사실은 '98년도에 재무국에서 했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를 들면 공원 내에 매점 이러한 게 있으면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입찰을 주관하는 부서는

○洪承台委員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는 팔각정 입찰을 재무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여기 그러니까 입찰을 여기서 받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

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전문부서에서 초안을 짜가지고 재무과로 내려보내겠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의를 해서 입찰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했습니다.

○洪承台委員 먼저는 그랬는데 2000년도에는 시설공단에서 아마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악팔각정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런데 왜 그리 넘긴 이유가 뭔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洪承台委員 좋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아니,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에 위탁관리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99년도에 13억 1,000만원으로 해서 주차장부지는 빼고서 팔각정을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1월달에 다시 제3차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13억 1,000에서 주차장을 뺀 나머지 팔각정 건물 자체만 했는데 주차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12억 6,000만원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없었던 당시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입찰은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을 5% 내지 10%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억 1,000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으면 13억 1,000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이죠. 계약보증금을 1억 3,1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현찰로 받으면 안되고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으로 1억 3,000 정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면 비용이 20만원 내지 30만원밖에 안해요. 13

억 1,000만원에 입찰을 봤다가 1년 후에 수지가 안맞든지 재미가 없으니까 계약한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쓰면 1억 3,100만원을 우리 구세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 계약보증금을 5년 동안 할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洪承台 前 議長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북악팔각정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13억 1,000만원은 그 당시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했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입찰을 본 주관부서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계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洪承台 前議長님께 별도로

○**洪承台委員** 저는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입찰계약보증금을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아왔으면 이렇게 쉽게 5년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가 계산해 보고 관둔다 해서 2년하다 관둬 가지고 다시 싼 가격으로 주차장까지 첨부해서 12억 6,000만원에 제3차 입찰을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보더라도 우리 구세로서는 1억 3,000만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1억 3,000이 구세로 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장치가 어느 과에서 했던 간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5년동안 계약을 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1년만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洪承台委員** 그것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 내용은 별도로 다른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洪承台 前 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뒤에 계신 계장님들 민원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계장님만 계시고 민원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존경하는 朴鍾植 前 委員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금방 우리 전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녹지과에서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유아무야 입찰을 다시 봐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넘겨준 과정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장님!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건물등기 주소하고 그 대지 주소하고 다른 게 많아요. 지난번에 지적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과 연계해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만 우선 하고 있는데

○**朴鍾植委員** 빠른 시일 내에는 안되겠죠. 어쨌든 다른 번지위에다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 잘못은 없지만 20년 전 공무원이든 30년 전 공무원이든 관공서에서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아요. 우리 제 관례

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사고 파는데 공무원들이 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덜 주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 한 5년 동안 공유재산심의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껴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부지를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땅 입자한테 감정가대로 팔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서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땅주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얼마인데 그 가격보다 상당히 더 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싸게 사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방 복덕방에 가서 얼마에 내놔습니까? 알아봐 가지고 10억에 내놔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12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억만 주고 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하나의 원인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제가 지적해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땅을 팔고 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싸게 사고 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유념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朴鍾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憲九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는 거기서 적출되지 않은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직원현황이라고 해서 TO는 101명인데 103명으로 되어 있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런데 물론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예산서 387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18명, 18명 그대로 있는데 세무1과는 현재 35명인데 3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명인데 37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 정원은 18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8명 맞습니까마는 세무1과인 경우에는 35명인데 33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무2과는 27명인데 37명으로 늘어버리고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공무원이 업무도 구로 이관이 되고 세무직공무원도 구로 재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공무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저희 구로 재배치 되면 향후에 세무1과하고 2과에 인력이 다시 재배치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조정을 해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세무1과는 오히려 인원이 줄었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세무1과는 2명 줄고 세무2과는 체납전담팀을 12명으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지적과에는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적과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현재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구에 이관하는데에 따라서 지적과의 인원도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장비란에 보면 말이죠, 인원이 103명인데 컴퓨터는 무려 131대입니다. 제가 1기 구의원 때는 각 과에 컴퓨터가 1대 내지 2대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103명에 103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131대 그렇다면 지금 28대는 지금 빗에 쓰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지적

과나 세무과같은 데는 민원용으로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李憲九委員 민원용으로

○財務局長 董連浩 내방하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종로구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쓸 수 있도록 민원인용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아서 용도폐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주 오래된 컴퓨터라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컴퓨터도 일부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憲九委員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지금 세무부서하고 지적과는 민원을 보는 민원부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개인용 책상에 있는 1인 1PC지만 민원대 창구는 그 직원들이 일일 교환식으로 고정배치식으로 배치된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순번대로 일일당번제로 해서 돌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창구에는 그 외에 오버로 되어 있는 PC가 있습니다. 민원대 창구에

○李憲九委員 그러면 몇 대입니까? 민원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 2과 합쳐서 13대입니다.

○李憲九委員 민원용으로요?

○稅務1課長 趙朝翼 예.

○李憲九委員 내가 가서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예, 고지서 발급용 저희들이 부동산을 주고받고 할 경우에 고지서를 출력해주는 그런 PC라든가 또 세무종합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서버라고 하나요? 서버기능식으로 해서 13대가 지금 민원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과연 그렇게 이용이 됩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오히려 컴퓨터 내구년한이 오래되었다든가 아니면 PC의 저기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못써서 창고에 처박혀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한 개 과에 13개씩 되어 있다는 게 말이

○稅務1課長 趙朝翼 한 개 과가 아니고요

○李憲九委員 2개 과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저희들 현황을 위원님이 한번 방문해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李憲九委員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58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두 사람에게 프린터가 1대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 좀 얘기해주세요.

○稅務2課長 朴升年 이 프린터기는 우리가 고정으로 민원고지서, 독촉고지서라든지 일반고지서 발급용으로 고정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직원들은 두 사람 앞에 또는 세 사람 앞에 프린터기 1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 앞에 프린터기 하나씩을 쥐야할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이 출력을 많이 하다보면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는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李憲九委員 기종이 됩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레이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아니 레이저식인데도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왜냐하면 세 사람이 출력을 같이 하면 그 한 사람만 쓰게 되고 두 사람은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쓰는 직원도 있고 또 가끔 공문, 일반행정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자료를 그때그때 출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아무리 많아도 두분에 한대씩 더군다나 레이저프린터가 있으면서 그나마도 모자라 가지고 공무원 일인당 프린터기 1대씩 가져야 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루종일 할 게 있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우리가 바로 치면 화면같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하면 프린터 속도가 엄청나게 늦습니다. 와서 보시면 될 겁니다.

○李憲九委員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390페이지에 복사기 구매해서 300만원짜리 1대하고 94

페이지 600만원짜리 복사기 민원인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300만원짜리는 재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용도고 600만원짜리는 민원인용으로 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1과에서 민원인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憲九委員 그건 제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관계인데 이자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에는 한 9억 5,000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적립금이 21억 3,213억 2,700만원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7.8%로 예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 주차장특별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 다음 아까 지적과에서 좋은 저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산화작업 말이죠 그러니까 국유지와 시유지는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地籍課長 徐燦奎 네.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 다음 구유재산은 종로3~5가동까지 2000년도에 완료가 되고

○財務局長 董連浩 그게 아니고 전산화문제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전산화하고 완료되어 있고 구유지는 2001년도에 전산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행자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아까 국·공유지 정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청운동하고 가회동에 이르는 것은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미리 마쳤고 내년도에 종로1~4가동부터 승인2동에 이르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李憲九委員 국·공유지를 우린 보통 깔고 앉았다고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그 개인이 파악됩니까? 이 전산화작업이 끝나면

○稅務2課長 朴升年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국유지, 시유지의 전산화가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전산화작업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고드렸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정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점유 사실 필지조사를 금년도에 청운동에서 가회동까지 금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종로1~4가에서부터 승인2동까지 점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작업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李憲九委員 그건 국장님이 설명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분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개인이 그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개인별 또는 필지별, 면적별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느냐 이 겁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그 관계는 이 전산화는 필지별로 몇 필지 몇평 어디 필지란 걸 전산화하는 거고 정밀조사라는 것은 그 정밀조사를 해봐야 개인이 땅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李憲九委員 그럼 안 되어 있던 얘기군요?

○財務課長 趙秀完 지금도 되어 있지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일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李憲九委員 금년하고 내년하고 우리 구유재산까지 지적상으로 실시가 되면 그때 가서는 알 수가 있다 이거군요. 현재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해 가지고 모르겠다?

○財務局長 董連浩 아니지요. 전산화작업하고 점유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측량하고 실사하는 작업은 별개입니다.

○李憲九委員 내년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실사해서 전산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지금 옥인동 47번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국공유지를 점유한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여태 사용료 한푼 안 받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 재산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매각처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관

계공무원들이 너무 녹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내가 1대 구의원 때 서회석 지적과장이 있을 때 2년 안에 우리 전 종로구의 지적관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다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되어있지 않더라 이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200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종로구 전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사를 해서 점유별 또 면적별 이걸 완전히 전산화할 수 있다 이거죠?

○財務課長 趙秀完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렇게 좀 해주셔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李憲九委員님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유선측량 GPS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망라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34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할 때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는 삼각점을 이용해서 측량하던 것을 지금은 시청의 장비를 빌려서 위성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기초점 설치비용에 43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430만원이면 우리 종로구 지적관계에 위성측량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14점 정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한꺼번에 못 하는 이유가 뭐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1대뿐이고 기술력하고 장비문제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올 해 조금 하고 내년에 더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다른 구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못 낸다는 겁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4대가 일조인데 한대당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매할 수가 없어서 올 해 조금 시행하는 겁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필지에 집을 지을 때 지적공사나 어디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남의 땅을 점유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땅이 저쪽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어져야 민원 제기가 덜 되고 또 자기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한한 서울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래야 전산망 구축을 해도 일률적으로 차질이 없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 있던 기초자료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사업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가 우선 재조사측량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 아주 과소필지가 많은데 위성측량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의 1/10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위성측량 안 했을 때는 얼마나 오차가 났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설명을 드리자면 각 도선과 각 도면의 축척, 기초점의 일등도선, 이등도선의 차이에 따라서 오차 차이가 있는데 1/600인 경우에는 쉽게 육안으로 읽을 수 있으며 0.1m선으로

가장 가늘게 굵다고 하더라도 그게 6cm입니다. 그것을 수치화 하는 그런 재조사사업이 끝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262번지 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적상으로는 분명히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집을 짓게 되니까, 측량을 하니까 도로쪽으로 많이 왔어요. 결과적으로 피해는 그 상대방에 있는 도로쪽으로 다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서 도로를 점유한 사람이 소송을 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모 국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지적공사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찾았다고 하고 이쪽에서 뺏기는 사람은 20년 전에 그거는 그 도로계획선이 이제 와서 어떻게 자기 집으로 30cm가 들어오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위성측량을 하루 빨리 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390쪽 세무1과에는 당해년도 전년대비 41%의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세무1과에 전년대비 41%가 증가했고 경상적경비가 37%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37%, 기타 수용비가 46%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과에 편성된 급량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급량비가 각과로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각과 공통적

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급량비가 각과에서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급량비, 여비에서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 포괄로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기타 수용비에 대해서 세세 항목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391쪽입니다. 플래카드 11만원을 10매씩 2회에 걸쳐서 게시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긴 하지만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는 보통 1m에 얼마씩 합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제가 미터 기준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의 주요 세원이 6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10월 달에 종합토지세가 부과 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 또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로 홍보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물론 반상회보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게 플래카드를 주요지점에 설치하는 그런 맥락으로 저희 주요 세목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서 2회로 10매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m당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래도 세무1과에서 산출기초를 낼 때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m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그 10만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보통 설치하는 플래카드 길이가 5m 정도 길이로 넓이는 한 90cm의 크기로 플래카드를 제작할 때 m당 한 2만원 정도를 단가로 예상해서 플래카드 제작비를 산출한 걸로 압니다.

○丁炳煥委員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m당 8,000원이면 이걸 달아주기까지 하던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다량으로 이걸 제작하는 데도 값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정은 2만원으로 산출된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그 점 유

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다른 항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각 의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부터 의심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위원님들이 제작하는 플래카드가 어떤 형태로 제작되었기에 8,000원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8,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예산을 과다하게 쓰기 위해서 책정된 건 아니고 플래카드는 제작되는 내용이나 형태, 색상 이런 것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적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정된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구요 어쨌든 간에 속담에 한가지 한가지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서 네번째 과오납 환부 지급통지서 및 명령서 이거를 3만 5,000원 해서 20박스인데 이거를 용지서식 인쇄하는 거죠? 이건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수작업도 아니고 전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과오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됩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지방세를 고지하다 보면 과오납제도는 반드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과오납 환불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과오납이란 것은 세금을 더 냈든지 덜 냈든지 하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과오납 아니겠어요? 그걸 수작업도 아니고 전산처리로 하는데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과오납이 됩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세금을 내라고 저희들이 먼저 고지서를 썼는데 그 납기 내에 세금을 안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독촉고지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그 사이에 세금을 냈는데 납세자가 그걸 안낸 줄 알고 독촉고지서가 갔을 때 그 영수증을

체크해 가지고 그걸 저번 걸 냈는데 안낸 줄 알고 또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저희들이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한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소송에 패소한 사례라든가 지방세 심사청구에 의해서 패소한 사례라든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납 환불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착오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의무자가 잘못해서 두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국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는 이를테면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액되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소송 등에 의해 가지고 납세한 그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다른 원인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 부과되는 것만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다음 393 포상금인데 전년대비 25% 증가했는데 뒷면 394페이지 일차년도 과년도 징수금 포상금은 28% 증가하고 2000년도 28%인데 같은 포상금이라도 오래된 거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을 더 많이 줍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네

○**丁炳煥委員** 그리고 稅務2課長한테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는 경상적경비가 41% 증가했는데 세무2과에서는 42%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우선 내년도부터는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인원이 12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금년도에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고속프린터기 일반수용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 아까 세무2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 편성되어 있던 급량비나 여비가 또

우리 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증가가 됐습니다.

○**丁炳煥委員** 증가폭이 세무1과보다 세무2과가 더 증가됐네요?

○**稅務2課長 朴升年**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12명이 늘어나고 또 고속프린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재무과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소소한 금액이지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웬만한 것은 절약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385쪽 불용용품 감정수수료 해서 35만원씩 3회 해서 감정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모두 어떤 물건을 감정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모든 행정장비가 다 포함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차량이라든지 오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각종 책상, 걸상,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꼭 감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야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절차상 무슨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공개에 의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吳弼根委員**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겠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것을 제가 간단히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감정을 1년에 한번만 한다면 이걸 장기간 차량을 방치를 해두면 감정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장비같은 경우에 매각은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3

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3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구유재산관리 수선비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관리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吳弼根委員** 389페이지 구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財務課長 趙秀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구유재산 중에서 저희가 임대해준 지금 1·2가동 마을금고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고장났거나 우리가 수선을 해줄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최소한도 금액을 계상해놓고 물론 이것이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일 뭐가 이상이 있다고 할 적에는 임대자로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수선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吳弼根委員** 작년에는 수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財務課長 趙秀完** 예, 없었습니다.

○**吳弼根委員** 지방세 누락 세원발굴 포상금이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금년에는 지방세 누락 세원발굴 포상금이 내년도 예산서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방세 누락 세원발굴 포상금은 저희가 지급한 적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을 안해 가지고 포상금을 안 썼다는

○**稅務1課長 趙朝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체납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저희들이 체납의 징수에 주력을 했고 사실은 지방세 누락세 세원발굴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원을 당연히 누락을 안시키고 발굴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幹事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자수입과 관련지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李憲九委員님께서도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자를 7.5%가량 얘기하신 적이 있던 말입니다. 7.8%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계산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9억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9억 5,0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잡으셨는데 세외수입을 그 세외수입 계산은 어떻게 해서서 9억 5,000만원 정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자수입 9억 5,600만원을 2001년도의 목표액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을 9억 5,600만원을 잡을 때는 그렇게 계상한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으셨는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가 사업소세 담당이죠? 사업소세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명이나 되세요?

○稅務2課長 朴升年 사업소세 담당직원은 총괄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사업소세가

○稅務2課長 朴升年 전부다 자진신고입니다.

○安載弘委員 결산검사할 때 언제나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업소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진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언제나 지적되는 내용을 보면 소위 종업원할하고 갑근세할하고 두가지가 있나요?

○稅務2課長 朴升年 종업원할하고 재산할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두가지가 있는데 사업소세 업무를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주민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했나요? 매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나눠서 합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나눠서 하는데 세무2팀에서

주민세 업무하고 하는데 총괄 담당을 하면서 그 직원이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부다 자진신고기 때문에 담당 한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安載弘委員 지장이 없습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예, 없습니다. 한사람 더 있으면 더욱 좋죠. 정원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지금 말이죠,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예산내역을 보면 내년에 80억이 넘는 세입인데 이것을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더 능률적으로 하게 되면 보다 탈루수입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稅務2課長 朴升年 그것은 세무1과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니까? 그 사업장 방문을 세무1과에서 조사평가계 직원이 있는데 또 우리 과에서 사업소세를 보기 위해서 또 간다면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지침상 조사는 조사평가계에서 나가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갈 수는 있습니다라는 거의가 다 서류 심사입니다.

○安載弘委員 서류에 의해서 사업소세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지방세도 굉장히 중요한 자치단체의 세입이예요. 그것은 국세청이 있어서 세무조사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지방세는 세원관리나 사후관리 즉 조사나 이러한 관계가 소홀이 되는 것 같은데

○稅務2課長 朴升年 우리가 지금 국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종업원할은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봉급을 주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세원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료가 주민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교차 조사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자기들이 신고한 것이 틀리다면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금방 나타나는데.

○安載弘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지역에서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까? 지체한다든가

○**稅務2課長 朴升年** 지체하면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게 되는데 거의 99.8% 이상이 납부입니다. 왜냐하면 20% 가산세가 붙는데 그러면 종업원에 대해서 봉급을 주고 종업원할을 안낸다면 그 회사에서 자체에서 해야지 종업원들한테 돈을 물리겠습니까? 회사 자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납부를 합니다.

○**安載弘委員** 사업소세 징수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이 관리해도 이상이 없고

○**稅務2課長 朴升年**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安載弘委員** 징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사업소세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稅務2課長 朴升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安載弘委員님! 맨처음 질문 구급고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일반 회계를 결산한 결과에 발생한 이자가 1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발생한 이자가 9억 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돼서 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약 한 10억 5,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리가 1개월 짜리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3개월 짜리 같은 경우에 금년 5월 1일 적용하는 금리보다도 10월 1일 이후에 적용하는 금리는 0.4% 정도 하락이 되고 6개월짜리가 0.5% 그리고 1년짜리는 0.5% 정도 하락되는 등 이율이 점차 하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금년 연말에 발생이 될 10억 509만원에 비해서 약 0.5%를 감액을 해서 9억 5,6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세입목표로 삼았습니다.

○**安載弘委員**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일 평균 공금잔액이 12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130억에서 170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평균잔액이 130억에서 170억이라면 40억 차이가 굉장히 큰 돈인데 종로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을 170억이라는 말을 때는 170억이 되겠지만 최저일 때는 1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안남기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금잔액을 170억에 가깝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財務課長 趙秀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들어오는 달이 있고 또 종합토지세가 들어오는 달이 있고 또 새해에 들어가면 우리 구년도 예산으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하면 월 한 80억 정도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70억에 달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100억이나 또는 80억 또는 40억 정도를 1일 공금잔액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달 동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머지 공금에 대해서 예치하는 것은 재무과 담당직원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치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전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공금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최저로 줄인다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증가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120% 상승을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1일 평균 공금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짜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된 공금 중에서 나머지 잉여공금은 전략적으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 이겁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지출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아, 이것은 12월달에 자금이 많이 나간다 할 경우에는 10월달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12월초에 찾을 수 있도록 2개월 정도나 3개월 해가지고 12월말에 나가도록 맞추고 최대한 도면화 해가지고 그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군포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한 방법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을 방법을 썼더니 이자가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80억 정도를 평균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 해 40억으로 평균잔액을 줄였대요. 50%의 1일 평균잔액이 남았던 것을 전략적인 그러니까 최대한 이율이 높은 예금 단기예금이겠죠. 그것을 찾았더니 연평균 이자가 전년도에 배가 되더라. 그러한 결과가 이번에 지방행정박람회 때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종로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남의 사례지만 사례가 객관적으로 이자수입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우리도 시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잘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일단의 주택을 짓게 되면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위 탈루세가 있다는 얘기죠. 공급주택 중에서 허가를 낼 때는 다가구주택으로 내고 한사람이 동일 건물을 다 쓰게 된다면 호화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호화건물의 개념이 200평의 대지이거나 100평 이상 주택일 경우에 호화주택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중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때 다가구 같은 거나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또는 전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는 그것을 개인이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포탈한 취득세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세무1과장 安載弘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부분에 대해 중과부분을 피해가지고 일반과세로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고급주택인데 일반과세로 과세가 되고 중과부분을 탈루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가 있느냐 그 말로 질의요약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부동산취득세는 자진신고입니다. 자진신고기 때문에 고급주택 기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지면적이 200평하고 건물과표가 2,500만원 시가표준이 2,500만원인 경우에 건물연면적이 100평이 넘을 경우에 고급주택인데 이 근사치가 실질적인 경우에는 주차장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시키면 건물연면적이 100평이 넘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준공 땀 때는 주차장면적이 100평이 안넘게 해서 차후에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전번에 시 감사 때도 감사원 감사를 대행해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주로 실례를 보자면 저희 부촌이라고 하는 평창동 지역이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적에 대해서 중과로 다시 취득을 부과해서 한 경우가 있고 고급주택 외에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취득 당시에는 종교용이라든가 교육용이라든가 재사용 이러한 사회교육시설로 비용도 비영리사업으로 취득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규정에도 그렇게 6개월에 한번

씩 그 현황을 반드시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지금 安載弘委員님이 말씀하신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아놓고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비용도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저번에도 시에서 감사원 대행감사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감사과 포함해서 합동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고맙습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을 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이나 주민이나 시민이나 동일인인데 개념이 말이죠,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거의 받지 않거나 지방세는 탈루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민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 가지고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고 그러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런 관념이 없는데 자치구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세입이 되는 것들이 이러한 취득세 취득세가 전부 우리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러한 세입에 대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2001년도 이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는 물론 철저하게 세원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입추계를 하시겠는데 거의 보면 전년도 세입이나 금년도 세입된 실적에다 추산을 하거나 점증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러한 예산편성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차피 지방자치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자치구도 이렇게 세입이나 또는 세원 추적 또는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 세무1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을 마감하는 뜻으로 재무과장님한테는 이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2001

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만드셔서 가지고 1년에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1년 후에는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투입된 비용만큼의 추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리 재무과장님은 이자관리 시스템을 전략적인 이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99년도 불용액이 1억 5,900만원이었고 세무1과의 불용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2,5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불용액이 맞습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을 거예요. 결산서에 나와있으니까. 돈을 안쓰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여러분들이 알뜰살뜰 쓰셨다고 보고 이것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幹事!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세입예산서 제작할 때 우리 재무국소관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를 넘버를 연결해서 재무국 소관을 넣었으면 좋을 텐데 쪽이 틀리니까 혼동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는 영똥하게 도시관리국에 속해있고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기능별로 재무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국별로 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별로 이것을 예산을 지금 나열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적과 예산을 찾으려고 한참 헤맸었던 기억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배치를 할 때 예산과목 배치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丁炳煥委員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끔 바로 연결해서 하면 알기 쉽고 좋을 텐데 혼동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후부터는 연속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건의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장관항, 세항 이러한 항목배치상 불가피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丁炳煥委員 지적과는 장관항, 세항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장에서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丁炳煥委員님 말씀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일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吳弼根 洪承台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朴鍾植
李炯述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朴升年
地籍課長 徐燦奎